

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남창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9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년 11월 19일

발 의 자 : 남창진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이승로, 유찬중, 우미경
김기대, 김희걸, 김정태
김인제, 박준희, 진두생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정비사업, 시장과 상점가의 시설
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분쟁을
조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법령
에 적합하도록 정비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(안 제2조제2항).
- 나.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함(안 제3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

1.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
2.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입차상인 간의 분쟁
3.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, 위원은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<생략> ②<u>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간의 분쟁으로서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.</u></p>	<p>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<현행과 같음> ② <u>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</u> 2. <u>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</u> 3. <u>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
<p>제3조 (구성) ①<생략> ②<u>위원장은 시장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, 지명직 위원은 시설계획과장·주거재생과장 및 시장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.</u></p>	<p>제3조 (구성) ①<현행과 같음> ②<u>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, 위원은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비용발생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남 창 진